

14. 地方稅法中 改正法律

法律 第4,611號, 1993. 12. 27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인구 :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경주·마권세

제5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주·마권세

제22조 본문중 “납기개시일(수시로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고지서발부일)”을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출자총액이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동호에 (1)내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1)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4)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제24조제1항중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를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로 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편정 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징수촉탁) ①이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신청자 또는 청구자”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으로 하며, 동조제9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2항중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결정기간만료일)”을 “통지를 받은 날”로 하며, 동조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의 심사결정에 대

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⑬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이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9조제1항본문중“(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를 “(관광진흥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로, “당해 사업인정공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을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

능한 날을,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지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10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차량과 동일한 중

류의 차량으로 교환받는 경우의 취득

제110조의3제2항제8호중 “양송이재배업”을 “버섯재배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6호중 “의료·재활등 근로복지시설”을 “의료·재활등 고유의 업무”로 하고, 동항제17호중 “의료·재활등 보훈복지시설”을 “의료·재활등 고유의 업무”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대체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항공기

제110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도·취재용항공기

제112조제3항중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를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25조 제8호중 “공인권”을 “저작인접권”으로, “공인권자”를 “저작인접권자”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영업표”를 “서비스표”로 한다.

제127조의2제1항본문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를 “(관광진흥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때에는”을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128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로 교환받는 경우의 자동차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8조의2제1항본문중 “법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등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7호중 “의료·재활등 근로복지시설에”를 “의료·재활등 고유의 업무에”로 하고, 동항제18호중 “의료·재활등 보훈복지시설에”를 “의료·재활등 고유의 업무에”로 한다.

12.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대체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28조의3제1항본문중 “법인의 부동산 소유권(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등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3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단서중 “업종에 대하여는”을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마권세”를 “경주·

마권세”로 한다.

제152조 및 제15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납세의무자) 경합·경연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는 그 경륜장·경연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경주·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53조(과세표준) 경주·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제154조중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

제155조중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납세의무자는 경륜·경연종료일 또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로 한다.

제156조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경마의 시행에”를 “경륜·경연 또는 경마의 시행에”로 한다.

제157조제1항·제2항 및 제158조제1항·제2항중 “한국마사회”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64조의 표중 “인구 50만이상 시”를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로 한다.

제1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

할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자소득·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제176조제1항제1호의 표중 “인구 50만이상 시”를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시”로 한다.

제177조제1항중 “징수는 제179조의3”을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으로 한다.

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2(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세액이 결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이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이 결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개정일부터 30일 이내

②법인세환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82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83조단서중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재산”으로 한다.

제184조의2제2항제8호중 “의료·재활등 근로복지시설”을 “의료·재활등 고유의 업무”로 하고, 동항제9호중 “의료·재활등 보훈복지시설”을 “의료·재활

등 고유의 업무”로 한다.

제184조의3제2항단서중 “취득한 날(토지 취득일전에 사업용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는 건축물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5년간에 한한다”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최초의 공장용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9호본문 및 제10호본문중 “사업용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각각 “사업용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의 공장용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건축물”로 한다.

제196조의4제1호중 “국방과 경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로 한다.

제196조의6제1항중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를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 하고, 동조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년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를 “년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자동차를 원시취득하거나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196조의6제4항중 “4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을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년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한다.

제196조의7을 삭제한다.

제196조의14를 제196조의15로, 제196조의13을 제196조의14로 하고, 제19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6조의13(납세필증명서등의 제시)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에 한한다)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납세필증명서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제234조의9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234조의13제2항제7호중 “의료·재활등 근로복지시설”을 “의료·재활등 고유의 업무”로 하고, 동항제8호중 “의료·

재활등 보훈복지시설”을 “의료·재활등 고유의 업무”로 한다.

제234조의14제2항단서중 “취득한 날부터 5년간에 한한다”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최초의 공장용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5년간)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8호본문 및 제9호본문중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를 각각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및 최초의 공장용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21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0조제3항중 “시장·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과의 제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환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1호 및 제12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교환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당해 법인세의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후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개정되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개정이유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과제중 지방세제개선사항을 입법화하고, 현행 지방세제도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며, 그동안 지방세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세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결정기간만료일에 기각된 것으로 보게 하는 착주규정을 삭제하고, 통지없이 결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상급심청구기간의 계산상 혼란이 없도록 함(법 제58조제9항).
- 나.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토지등이 수용되는 경우 종전에는 1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축중인 주거용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비과세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의 범위를 확대함(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1항).
- 다. 취득한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당초 취득차량과 동일한 종류의 차량으로 교환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110조제1항제11호 및 제128조 제15항).
- 라. 중소기업협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자를 종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자도 추가하여 그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법 제110조의3제2항제12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12호).
- 마. 대도시교통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배 초과하도록 함(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 바. 대도시내에서 신설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주거용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등록세증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법 제138조제1항단서).
- 사. 자동차세관련 규정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과세편의위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납세자편의 위주로 개선함(법 제196조의6제3항·제4항 및 제196조의7).
- (1) 중고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전소유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세를 양수자가 승계하는 자동차세납부의무승계제도를 폐지함.
- (2) 자동차세의 년세액을 일시에 자진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년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하는 공제제도를 신설함.
- (3) 자동차세의 년세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4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